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7. 11.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5년 6월 22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05년 7월 1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14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05년 7월 4일)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조 유 근)

가. 제정이유

- 2003. 7. 30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로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안 제2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해야 하고,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무협의체를 두도록 함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안 제3조)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임명하되, 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 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주사 및 보건소 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함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6조, 제7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간사 및 직원(안 제8조)

각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며,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회의 등(안 제9조)

각 협의체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함.

○ 회의수당 및 협의체 운영지원(안 제14조, 제15조)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남 식)

○ 본 조례안은 2003. 7. 30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과 보건의 연계로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05. 7. 31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안 제2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시행 및 평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기타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을 규정하고,

○ 안 제3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임명직 및 위촉직으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하기 위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 안 제9조 내지 제13조는 각 협의체 회의운영 및 안건에 대한 의결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봄.

○ 그러나 안 제8조 제3항을 보면 각 협의체에 운영지원을 위한 상근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5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바 이는 각 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일반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 된 바 상근 유급직원을 두어야 할 만큼의 업무량과 필요성이 있는지 또 협의체 지원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62
----------	-----

제출년월일 : 2005.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2003. 7. 30)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해야 하고,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함.(제2조)
- 나.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조1항, 2항, 3항)
- 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 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 공무원(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함.(제3조5항, 6항)
- 라.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마. 각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함께 처리하도록 함.(제8조)
- 바. 각 협의체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함.(제9조)
- 사.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회의공간을 지원하여야 함. (제14조 및 제15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나. 예산조치 : 회의 참석수당 등 추경 반영 예정

다. 입법예고예외규정 적용 : 구청장방침 제393호(2005.5.20)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생활복지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행규칙 제1조의 4제2항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 하되, 사회복지담당주사, 보건소 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6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복지업무 담당부서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안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